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

「과주시 공고 제2025-2546호(2025. 9 1.)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)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23.

과 주 시 장

사업내역(건축허가 개요)

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층수(동수)	주용도
파평면 장파리 1223번지 (파평면 장파리 파평일반산업단지 13)	49,942.7㎡	36,420.79㎡	57,425.83㎡	지하2층, 지상4층 (3개동)	방송통신시설 (촬영소)
안전점검비용 : 금82,645,800원(VAT별도)					

지정결과 [평가점수 결과]

대지위치	업체명	제안가격	평가점수	비고
파평면 장파리 1223번지 (파평면 장파리 파평일반산업단지 13)	(주)정우구조엔지니어링	48,286,000원 (VAT별도)	99.98점	

※ 평가 점수 = 사업수행능력평가(40%) + 수행가격평가(60%)

□ 기타 안내사항

-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완료 후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, 투입일,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파주시 허가2과,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

-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(※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(www.csi.go.kr)을 통하여 제출)

- ※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2과 건축허가2팀(031-940-586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